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근로자 특화 전직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6개월간 기존 대비 20만원이 증가된 월 최대 4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에 힘써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본 제도가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프로그램 안내를 병행하는 등 고객의 접점에서 활동을 전개해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별 고용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포스터

2.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개요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조원구 (02-519-2011)
		담당자	과 장	서주형 (02-519-2013)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시행일 : '25. 8. 1.)



지원대상

· **건설업 퇴직자** (①~③ 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II 유형 참여자격 요건 충족(아래 표 참고)
- ②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아래 QR)를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참여수당 10만원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 20만원(1일 1만원) × 6개월 추가 지원

지원시기

각 수당(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마다 추가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구분	Ⅰ 유형		Ⅱ 유형		
연령	15~69세	청년 15~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취업지원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교육/복지 연계 프로그램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 1인당 10만원씩 추가		/		
			기존 지원	15~25만원 (1회)	월 최대 28.4만원 (6개월)
			추가 지원 (건설업 퇴직자)	10만원(1회)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소득지원(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무시 50만원, 12개월 근무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 Ⅰ-Ⅱ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I 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www.work24.go.kr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인스타그램 job.erum.moel



문의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프로그램 개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 중 최종 근무지가 건설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추가 지급하는 등 전직 지원
 - *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통상 1년), 생활안정 지원(6개월)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21년~)
 - **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25년 기준 1인 가구 약 239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인 15~69세 참여자 (청년(15~34세)은 소득 무관)

- ☐ (목적) 건설업 퇴직자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상용직 또는 직종 전환 등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원
- ☐ (지원 요건) 이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II 유형 참여자격 요건(연령·소득) 충족
 - ②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상용, 일용, 노무제공자 포함)
 - * 세부요건은 고용24 홈페이지 확인 가능
 - ③ 상담 과정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10만원)만 추가 지급
- ☐ (지원 내용)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10만원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 20만원(1일 1만원)×6개월 추가 지원
- ☐ (지원 규모) 건설업 퇴직자 1만명, 122억원('25년 下)
- ☐ (지원 시기) 각 수당(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마다 추가 지급